

1.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6,593호 1999. 11. 12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2호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,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

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중 “5호”를 “2호”로, “5세대”를 “2세대”로 한다.

주택회보